

【 4 】 양주군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1997. 7. 22.

발 의 자 : 이홍규의원의외 2인

□ 제안이유

양주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·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를 추가함.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
- 6.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·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자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범위) 의회·위원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.</p> <p>1. - 4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 신 설 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( 신 설 )</p>	<p>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 기관의 장</u></p> <p>6. <u>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 의 실·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</u></p>

## 양주군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

{ 1991. 4. 8 }  
{ 조례 제1380호 }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범위) 의회·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부군수
2.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·과장급
3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
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실·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자.

부 칙 (1991. 4. 8 조례 제1380호)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
第 4 節 下部行政機關

第108條 (下部行政機關의 長) 自治區가 아닌 區에 區廳長, 邑에 邑長, 面에 面長, 洞에 洞長을 둔다. 이 경우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.

第109條 (下部行政機關의 長의 任命) ①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이 任命한다.

②邑長·面長·洞長은 一般職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, 市長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任命한다. (改正 94. 3. 16)

③削除 (94. 3. 16)

第110條 (下部行政機關의 長의 職務權限) 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은 市長의, 邑長·面長은, 市長 또는 郡守의, 洞長은 市長(區가 없는 市의 市長을 말한다) 또는 區廳長(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한다)의 指揮·監督을 받아 소관 國家事務 및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職員을 指揮·監督한다. (改正 94. 3. 16)

第111條 (下部行政機關) 自治區가 아닌 區와 邑·面·洞에 소관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, 그 設置에 관하여는 市·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이를 정한다. 이 경우 洞은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洞을 말한다.

第 5 節 教育·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

第112條 (教育·科學 및 體育에 관한 機關) ①地方自治團體의 教育·科學 및 體育에 관한 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機關을 둔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.

第 7 章 財 務

第 1 節 財政運營의 基本原則

第113條 (健全財政의 운영)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收支均衡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